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57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이훈기 · 김문수 · 이주희
박지원 · 조계원 · 박해철
김 윤 · 이병진 · 박 정
박용갑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u>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 ----- ----- <u>전체 매</u> <u>출액의 100분의 4를</u> ----- ----- ----- <u>. 다만, 제9호에</u> <u>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u> <u>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u> <u>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u> <u>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	③ ----- ----- ----- ----- ----- ----- ----- -----

